



제428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명의인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〉
■ 김승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883호)

2025. 8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김승원의원 등 10인

나. 제 안 일 : 2025. 4. 16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17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(死者)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.

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4조의2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☐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 보)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 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 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·제2 호(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 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)·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 공한 날(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끝난 날)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 용 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을 <u>명의인에게</u>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.	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 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의인(명 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 우에는 명의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 속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 조의3제1항제5호에서 같다)에게</u> 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금융실명법”이라 함) 제4조의2는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거나, 「금융실명법」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 중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.

[표 1] 「금융실명법」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

구분	대상	명의인 통보 여부
제1호	·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 발부 영장에 따른 제공	○
제2호	·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· 상속·증여 재산, 조세탈루 혐의, 체납자 재산 등 확인	○ ¹⁾
제3호	·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조사위 의결에 따른 제공	○
제4호	· 금융위·금감원·예보의 금융회사등 감독·검사를 위한 제공	×
제5호	·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	×
제6호	·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	×
제7호	·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등을 위한 제공	×
제8호	· 다른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	○

주1: 다만,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

□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으나 명의인이 사망·또는 행방불명인 경우,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에게 통보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

지로 이해됨.

○ 실제로 금융회사 등은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이후 명의인이 사망하거나, 사망한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¹⁾에도 사망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.

○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제도는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, 개정안이 명의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이후라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에 게 이를 통보해야함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.

□ 다만, 명의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이 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1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3조(금융재산 일괄 조회) ① 국세청장(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.

1. 직업, 연령, 재산 상태,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·피상속인 또는 증여자·수증자(이하 이 조에서 "피상속인등"이라 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.

1.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/ 2. 사용 목적 / 3.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

- 명의인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바로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지 않고, 상속인 등이 해당 사실을 직접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.
- 참고로,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’ 또는 정부(행정안전부)가 운영 중인 ‘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’에 신청하게 되면, 금융기관 등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통보되고,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각종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-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금융기관 등에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통보되기 전에는 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,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이 아닌 상속인 등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106